

B2B 전자결제서비스 업무지원 협약서

(e-Marketplace 용)

_____ (이하 "MP"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B2B 전자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지원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MP 가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서비스 이용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MP 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하 "거래기업"이라 한다)간 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시장(e-Marketplace)을 운영하고, 은행이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지원과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고, 이러한 업무지원을 통해 상호 이익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제 2 조 (제약관 등의 준용)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구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및 e-구매론 등 결제수단(이하 "결제수단"이라 한다)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또는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결제수단을 위한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별도의 계약서(또는 약정서)의 내용을 본 협약에서 정한 양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준용하기로 한다.

제 3 조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① MP 는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용 인터넷뱅킹(이하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MP 는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터넷, 전용회선 및 기타 전산적인 방법으로 은행과 통신(자료의 송수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과 통신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인증서 및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제 4 조 (결제수단의 종류)

은행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위하여 거래기업에게 제공하는 결제수단은 구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및 e-구매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할 수 있다.

제 5 조 (매매계약의 내역 통보 및 재접수)

- ① MP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거래기업간 매매계약의 내역을 은행에 전산상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2. 계약일
 3. 매매계약 체결일
 4. 매매계약 대상품목
 5. 물품의 규격, 수량 및 단가
 6. 매매계약 금액
 7. 거래구분(일반거래, 매매보호거래)
 8. 지급승인구분(접수방식, 지급승인방식, 자동승인방식 등)
 9. 결제수단
 - 10.결제예정일
 - 11.인수통지예정일(매매보호거래에 한함)
 - 12.만기일
 - 13.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금액 및 부담주체
 - 14.거래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 15.MP 의 사업자등록번호
 - 16.기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는 사항
- ② MP 는 제 1 항에 따라 통보한 내역과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이 다른 사실을 알게 되거나 거래기업으로부터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전산상의 방법으로 재접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일반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재접수를 할 수 없으며, 매매보호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계정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지급위탁된 경우에는 재접수를 할 수 없다.

제 6 조 (변경 및 취소)

매매계약변경 및 매매계약취소 절차와 제한사항은 업무별로 아래와 같이 따른다.

① 매매계약변경

1. 일반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매매계약변경을 할 수 없다.
2. 매매보호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계정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지급위탁된 이후에도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을 하기 전까지는 인수통지예정일을 변경하는 매매계약변경은 가능하다.

② 매매계약취소

1. 일반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 단, 연지급결제수단의 경우, 판매기업이 선입금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거래기업이 MP 에 의뢰한 후 MP 의 승인 및 MP 의 은행에 대한 통보의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며, 매매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지시취소의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보호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계정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지급위탁된 이후에도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을 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며, 매매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위탁취소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이후에는 매매계약변경 및 매매계약취소는 불가하다.

④ MP 는 매매계약의 재접수/취소/변경의뢰, MP 의 승인 등 MP 가 은행에 통보하기 이전의 절차에 대하여는 거래기업과 별도 약정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 7 조 (은행의 조치사항)

- ① 은행은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라 MP 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MP 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에서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 필수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게시를 보류하고 MP 에 재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거래기업이 인터넷상 또는 창구상에서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MP 에 전산상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 3 호에 대하여는 은행의 전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통보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MP 의 통보에 대한 수신응답
 2.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 사실
 3. 매매계약변경, 매매계약취소에 대한 거래기업의 승인 사실과 그 취소사실
 4. 권리이전(인수) 사실
 5. 기타 전자결제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는 사항

제 8 조 (수수료 등)

- ① 은행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거래기업에 B2B 이용수수를 청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요율 산정에 대하여는 MP 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② 은행은 MP 가 요청하는 경우 MP 를 대행하여 거래기업으로부터 중개수수를 징구하기로 한다. 이 경우 MP 는 사전에 거래기업과 약정하여 은행의 징구대행에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이 중개수수료 징구대행을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은 MP 가 책임지고 발급하여야 한다.
- ④ MP 는 중개수수료, B2B 이용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시 수수료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수수료는 결제수단별로 수수료 부담 주체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구하기로 한다.
 1. 구매자금대출

- (1) 구매기업 부담 시 : 구매기업이 결제 시 B2B 이용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당일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 (2) 판매기업 부담 시 : 판매기업 계좌에 대금 입금 시 B2B 이용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당일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2. 일반자금대출
- (1) 구매기업부담 시 : 구매기업의 결제 또는 지급위탁 시 B2B 이용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당일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 (2) 판매기업부담 시 : 구매기업이 결제 또는 권리이전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대금 입금 시 B2B 이용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당일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3. e-구매론
- (1) 구매기업 부담 시 : 구매기업이 결제 또는 지급위탁 시 B2B 이용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당일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 (2) 판매기업 부담 시 : 만기일(결제일)에 B2B 이용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당일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제 9 조 (보안 및 정보관리)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와 자신의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② 각 당사자는 전자결제서비스 진행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상대방 및 당해 거래기업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기업의 거래정보 및 고객정보를 제 3 자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사고장애시 처리)

- ① MP 는 본 협약에서 정한 통신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한 인증서, 스마트카드, 자물쇠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이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11 조 (양도의 제한 등)

- ① MP 는 접근수단, 은행이 제공한 전산시스템 및 전산관련 자료,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 자에게 대여, 위탁,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MP 는 전용프로그램을 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대여, 임대,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수정 또는 본 업무지원의 목적외로 복제하여서는 안된다.

제 12 조 (손해배상)

-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MP 는 은행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1. 제 6 조 제 5 항 및 제 8 조 제 2 항에서 정한 별도 약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약정을 맺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부인됨을 이유로 하여 은행이 거래기업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 2.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기업의 동의없이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는 자동승인방식 또는 자동할인방식에 있어 MP 가 전송한 매매계약이 허위, 작성오류 등으로 인하여 은행 또는 거래기업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3. 전자상거래가 아닌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은행 또는 거래기업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4. 기타 본 업무지원협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 또는 거래기업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②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MP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MP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 13 조 (면책)

- ① 은행은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인 경우,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 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 14 조 (협약기간 등)

- ① 본 협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이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래도 그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그 위반이 중대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좌거래정지, 파산 등 신용이 악화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지로서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본 협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종료 이전에 발생한 전자결제서비스 건에 대하여는 절차완료시까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제 9 조 제 2 항 및 제 11 조 제 12 조는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 15 조 (합의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 협약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월 일

[MP]

기 업 : _____ (인)

주 소 : _____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인)

주소 : _____